

‘98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

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8. 9. 11 평창군수(재무과장)

나. 회부일자 : 1998. 9. 15

다. 상정일자 : 1998. 9. 16 제59회 평창군의회 (임시회)
제2차 본회의

2. 제안이유

- 지방재정법 제77조,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평창군
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「‘98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」에
대하여 평창군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첨부된 안과 같이 제안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안한 「‘98평창군
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」은 토지취득 1건과 토지교환 2건등 총3건임.

나. 토지취득은 대화면 지역에 계획중인 대화체육공원 조성부지 1건으로 6필지
12,846㎡이며

다. 토지교환은 도암 용산리, 유천리 경계지역의 공유지 2필지 24,599㎡를 농촌특산
품 전시판매장 건립부지로 선정된 영동고속도로 황계I.C 인근의 사유지 2필지
5,000㎡와 교환하는 것임.

라. 또한 공유림집단화 및 평창경찰서편입토지 민원해결을 위하여 공유임야 1필지
88,207㎡를 사유임야 1필지 82,215㎡ 및 평창경찰서 편입 사유토지 3필지
1,845㎡와 교환하고자 하는 것임.

4. 검토의견

가. 1998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난 제53회 평창군의회(정기회) 제4차 본회의('97. 12. 15)에서 의결되었던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 금번에 1차 변경 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 토지취득 1건과 토지교환 2건등 총 3건임.

나. 취득 및 교환재산 내용을 살펴보면

- 토지취득은 대화면 지역에 계획중인 대화체육공원 조성부지 1건으로 6필지 12,846㎡이며
- 토지교환은 도암 용산리, 유천리 경계지역의 공유지 2필지 24,599㎡를 농촌특산물 전시판매장 건립부지로 선정된 영동고속도로 황계I.C 인근의 도유지 2필지 5,000㎡와 교환하는 것임.
- 또한 공유림집단화 및 평창경찰서 편입토지 민원해결을 위하여 공유임야 1필지 88,207㎡를 사유임야 1필지 82,215㎡ 및 평창경찰서 편입 사유토지 3필지 1,845㎡와 교환하고자 하는 것임.
- 농촌특산물 전시판매장, 체육공원조성, 민원해결 등 지역의 현안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한 토지취득 및 교환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됨.
- 그러나 농촌특산물 전시판매장의 건립부지에 있어 공유지 처분과 도유지 취득에 있어서는 단순히 면적비교에 있어 도유지가 65,776㎡(19,897평)가 더 많음. 아울러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예정가격에 있어서도 도유지가 858만원이 더 많음.
- 상호교환하는데 있어서 면적과 금액과의 차이는 어떻게 협의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될 것임.
- 기타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